

세종캠퍼스 원격수업 운영 규정

2020. 4. 1. 제정
2021. 5. 1. 일부개정
2023. 5. 1. 일부개정
<교수학습정보센터, 교무학사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학칙」 제23조제1항에 근거하여 세종캠퍼스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을 말하며, 'Flipped Class', 'MOOC' 등을 포함한다.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및 토론 등)으로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개정 2023. 5. 1.>
2. '실시간 원격수업'이란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비대면으로 시행하는 양방향 실시간 화상수업을 말한다.
3. '비실시간 원격수업'이란 녹화강의와 기타 온라인 학습활동(퀴즈 및 게시판 토론 등)으로 구성된 강의콘텐츠를 이용한 수업을 말한다.
4. 'Flipped Class', 'MOOC'라 함은 원격수업의 형태를 일부 활용한 교과목으로서 별도의 운영방식을 따르는 교과목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원격수업의 질 관리와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세종캠퍼스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세종교육혁신원장, 및 교수학습정보센터장)을 포함하여 세종부총장이 임명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촉직 위원으로 관련 전문가를 1인 이상 위촉하고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학사팀 및 교수학습정보센터 직원 각 1명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⑥ 위원회 관련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종캠퍼스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계획
2. 세종캠퍼스 원격수업 품질 관리
3. 세종캠퍼스 원격수업 지원
4. 그밖에 세종캠퍼스 원격수업에 관련된 사항

제5조(원격수업 승인) 교과목을 원격수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원격수업 지원) ① 세종캠퍼스는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원격수업을 위한 콘텐츠(예: 음성·영상 등의 교육자료) 개발 및 갱신
 2.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예: 교육조교 배정)
 3. 원격수업 활성화에 필요한 장려금
 4. 그밖에 원격수업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 ② 원격수업과 관련된 기술·장비 등의 지원은 교수학습정보센터에서 담당한다.

제7조(지적재산권) ① 세종캠퍼스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원격수업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세종캠퍼스에 귀속된다.

- ② 세종캠퍼스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원격수업 콘텐츠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개발자와 세종캠퍼스 사이의 계약에 따라 분배한다.
- ③ 본교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를 본 대학의 강의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의2(의무) 본교 구성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국가의 「저작권법」 제2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고시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담당 교원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 영상이나 수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원격수업 도중 구성원의 이미지나 영상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행위 및 캡처한 이미지나 영상을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본교가 제공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온라인 강의 도구의 공개 주소나 계정정보를 해당 교과목에 수강 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 ③ 강의 내용 및 자료의 무단 활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제작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담당 교원에게 있다.

<본조 신설 2023. 5. 1.>

제8조(개설 및 관리) ① 학과별 원격수업 교과목 학점 수는 해당 학기 개설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대학원 개설 교과목에 대해서는 각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정규학기 원격수업 교과목 수강은 학기별 총 수강신청 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학부 초과학기생 및 계절학기 수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학원생의 경우 각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고등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원격수업 교과목은 강의계획서 및 강의시간표에 ‘원격수업’임을 명시해야 한다.
- ⑤ 원격수업 교과목의 분반, 성적평가, 및 재수강은 출석수업 교과목에 준한다. 단, 비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분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학기별 2회 이상 강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수업) ①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은 한 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② 원격수업의 1차시 당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은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1차시 총 학습시간은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출결관리) ① 실시간 원격수업의 출석인정은 출석수업에 준하고, 비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강의콘텐츠의 80% 이상을 수강해야 해당 차시 출석으로 인정된다.

- ②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해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또는 기타 원격수업용 서비스(클라우드서비스를 포함함) 등을 활용하여 출결확인을 해야 한다.

제11조(평가) ① 중간 및 기말고사는 학사 일정에 따르며, 오프라인 방식으로 시행하여 평가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1. P/F로 평가하는 경우
 2. 「고등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 ② 온라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경우, 기술적 보안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원격수업 개설 장려) ① 원격수업 교과목을 「책임수업시간 및 강의로 지급 규정」이 정하는 책임수업시간으로 인정하되, 시수는 출석수업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전임교원이 원격수업을 한 때에는 「교원업적평가 규정」이 정하는 교육역량 강화(제73조제2호)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원격수업 콘텐츠 공개) ① 원격수업 콘텐츠는 세종캠퍼스의 사회적 책무 수행 차원에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② 원격수업 콘텐츠를 외부에 공개한 경우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외부인에게 일정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콘텐츠 관리) 콘텐츠의 질 관리를 위해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콘텐츠는 담당교원이 위원회에 계획안을 제출하여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콘텐츠 유지 또는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원격수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거나 본교의 관련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규정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